

[별표 1] <신설 2014.12.1.>

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(제2조의2제2호관련)

제조업	한국표준산업분류	비 고
떡류 제조업	10711	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빵류 제조업	10712	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	10713	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	10730	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, 면류(라면은 제외한다)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커피가공업	10791	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,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.